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2023.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1. 17.

#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2023년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전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종료 후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 나.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간소화(안 제9조제2항, 제3항)
- 다.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9조제4항,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2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미반영[복지지원과-40456(2023. 10. 23.)]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제3항 ⇒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제3항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미반영 ⇒ 상위법에 규정되어 당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541호

가) 예고기간: 2023. 10. 12.(목) ~ 2023. 11. 1.(수)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호선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위원장은 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 한다.</p> <p>③ <u>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u>당연직 위원</u></p> <p style="margin-left: 20px;"><u>가. 교육청소년과장</u></p> <p style="margin-left: 20px;"><u>나.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u></p> <p>2. <u>위촉직 위원</u></p> <p style="margin-left: 20px;"><u>가.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u></p> <p style="margin-left: 20px;"><u>나.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u></p>	<p>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 ----- ----- <u>둘 수 있다.</u></p> <p>② ----- --- <u>10명</u> ----- ----- 호 <u>선한다.</u></p> <p>③ <u>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u></p> <p>1. <u>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u></p> <p>2. <u>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u></p>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 표

다.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시설 의 장

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의 보호자 대표

마. 교육청 관계자

<신 설>

<신 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 한다.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 을 받은 센터장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삭 제>

<삭 제>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임·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④ -----  
----- 개 의 하 고 -----  
-----  
-----.

⑤ 위원장은 위원회-----  
-----  
-----  
-----  
-----.

<삭 제>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  
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